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54

제안년월일 : 2022년 6월 14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에서 임원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장, 감사와 달리 이사의 직무 내용이 다소 지엽적인 측면이 있어 이사회 부의 안건의 심의·의결,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등을 추가해 포괄적으로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보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요청,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감사를 두며,”를 “감사를 두고,”로 하고, “법 제4조제3항에”를 “법 제4조제3항에”로 한다.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요청,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6조(임원의 구성과 직무)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과 직무)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이사는 **이사회의 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 중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요청,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관장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자·출연 기관이 장은”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임원의 정수와 구성”을 “임원의 구성과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로, “법 제4조 제3항에”를 “법 제4조제3항에”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제3항과 제6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요청,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출자·출연 기관이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정수와 구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과 직무)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을 대표하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③ 감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 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의 요

	구,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요청,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다.